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69호 2019. 5. 1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50호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5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4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1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7
- 삼척시 공고 제421호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 2019 - 50 호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바람직한 농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3. 사업비 : 500,000천원
 - 국고 (350,000천원), 지방비(150,000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2리
 - 지역경관개선사업
 - 경관길 조성 (경관수 식재 2,200m, 진입로 경관조성 297㎡, 쉼터조성 2개소, 재활용 수집장 개선 5개소)
 - 경관길 정비 (CCTV설치 10개소, 마을이정표 5개소, 마을종합안내도 1개소)
 - 지역역량강화사업 : 주민교육, 마을브랜드 개발, 방림마을스토리텔링 개발

- 5.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 6. 사업기간 : 2018. 05. ~ 2020. 12.
-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농정과 (☎ 033-570-3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9 - 5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318-136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71-6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318-136	20190510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40, 244-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2	2019051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71-6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318-136	20190510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원덕읍정화습지센터&호산리이점 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40, 244-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2	2019051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계	2건					

삼척시 공고 제2019-41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05.03. ~ 2019.05.17.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05.18.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중○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523-4	
	목조 (1층:46.08㎡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03.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9-421호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 관광지 시설사용료 정비 및 현실화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를 현행법 「청소년 보호법」에 준하여 개정(안 제2조)
- 나. 시설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관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우편번호 : 25914

전화 : 033-570-3844, FAX : 033-570-314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사·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관광지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사용료는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 용 료
샤 위 장	어른, 군인, 청소년	1회	2,000
	어린이(초등생)		1,000
탈 의 장	어른, 군인, 청소년	1회	무료
	어린이(초등생)		무료
주 차 장	경형자동차	4시간 이내	1,000
		1일 (4시간 초과)	2,500
	승용차, 소형차	4시간 이내	2,000
		1일 (4시간 초과)	5,000
	버스, 중대형화물차	4시간 이내	4,000
		1일 (4시간 초과)	10,000
방가로·텐트	6인용 미만	1일 기준 (1회)	30,000
	6인용 이상		40,000
차양시설	L형 텐트	1일 기준 (1회)	15,000
	파라솔		10,000
	파라솔 (탁자, 의자포함)		25,000
기타편의시설 (이용객 설치시설)	텐트형, 그늘막형	1일 기준 (1회)	10,000
	파라솔형		5,000

※ 자동차의 구분

- 경자동차 : 배기량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5m 너비1.5m 높이2.0m 이하의 자동차, 단, 2008년 1월 1일부터 배기량은 “1,000cc 미만” 으로 길이 및 너비는 각각 3.6m, 1.6m 로 한다.
- 소형차 : 15인 이하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버스, 중대형화물차 : 16인승 이상 승합차,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생략)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7. (생략)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7. (현행과 같음)
<p>제6조(시설사용료) ① 관광지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한다.</p>	<p>제6조(시설사용료) ① ----- -----별표 2----- -----.</p> <p>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사용료는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